

전문건설업 청문조서 열람 안내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10조(건설업 등록기준)에 미달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6조(청문) 및 「행정절차법 시행령」 제19조(청문조서의 열람등) 규정에 따라 청문조서 열람 안내 공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,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대상업체

업 체 명 (대표자)	소 재 지	등 록 업 종 (등록번호)	예정된 처분내용	처분근거	비고
조은건설㈜ (손호성)	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호명로 557-9	철근콘크리트공사업 (의성2010-9-02) 토공사업 (의성09-02-5) 조경식재공사업 (의성2010-16-02)	영업정지	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3조제3호 (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)	

2. 공고기간 : 2019. 4. 22. ~ 2019. 5. 8

3. 공고방법 : 예천군 홈페이지 · 읍면 게시판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· 게시판

4. 공시송달 사유 : 전문건설업 청문조서 열람안내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5.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예천군 건설교통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(☎ 054-650-6331 / fax 054-650-6339)

2019. 4. 19.

예 천 군

